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,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, 관세청의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(6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371”을 “372”로, 일반직 계 “370”을 “371”로, 관세주사 “84”을 “85”로 한다.

별표 4의2 중 총계 “379”을 “380”로, 일반직 계 “378”을 “379”로, 관세주사 “97”을 “9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71	372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370	371	+1
·	·	·	
·	·	·	
관세주사	84	85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의2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79	380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378	379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관세주사	97	98	+1
•	•	•	
•	•	•	